

**동물복지에 관한 마닐라 회의(2003)와
코스타리카 운영위원회 회의(2005)에서
작성된 장관급회의 검토를 위한 1차 초안**

세계동물복지선언

장관급회의 검토를 위한 건의사항

세계동물복지선언(안)에 관한 다음 건의사항은 장관급회의의 준비단계에서 검토되어야 한다:

서 문

[동물복지에 관한 마닐라 회의에 이어, 코스타리카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:]

동물복지문제는 각 국 정부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다.

동물복지증진은 모든 이해관계자 및 관련 당사자들의 공동 행동을 필요로 한다.

동물복지에 관한 활동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.

**[동물복지에 관한 마닐라 회의(2003. 3),
코스타리카 운영위원회 회의(2005. 11)]의
동물복지선언에 관한 제의**

동물은 살아있는 존재이며 지각능력이 있고 배려와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식한다;

동물복지는 동물의 건강관리를 포함하며 [이에,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유지하는데 있어 수의사의 역할이 필수적임을] 인식한다;

인간은 다른 종, 다른 생명체와 함께 지구상에 [살고] 있으며, 다양한 종류의 생명체가 상호 의존하는 환경시스템 안에서 공존함을 인식한다;

[국제수역사무국(OIE)이 동물복지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중인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한다];.

[국가]라는 용어는 국민과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것임에 동의한다;

많은 [국가]가 가축과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이미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한다;

이들 법정 장치가 지속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, 보다 진전되고 광범위한 동물복지 규정을 제정하도록 모색한다;

동물에 대한 인도적 처우가 인간에게 중요한 혜택을 줄 수 있음을 인정한다;

‘동물의 5대 자유(배고픔, 갈증, 영양결핍으로부터의 자유,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, 불편함으로부터 자유, 고통, 상처, 질병으로부터 자유, 정상적 행동을 표현할 자유)’와 ‘3R 원칙(reduction: 실험 동물 수의 감소, refinement: 실험 동물의 고통 경감, replacement: 동물실험 이외의 방법으로 대체)’이 동물의 사용에 관해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을 안다;

이 선언에 포함된 규범은 어떤 [국가]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한다;

선언의 원칙

1. 동물복지는 모든 [국가]의 공통된 목적이 되어야 한다;
2. 각 [국가]가 수립한 동물복지의 기준은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보다 진전된 방법으로 추진되고 인식되며 감시, 관찰되어야 한다. [사회 간에 상당한 사회, 경제,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나, 각자는 이 선언이 명시한 원칙에 부합하도록 인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동물을 돌보고 처우해야 한다];
3. [국가]는 동물 학대를 금지하고 동물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적절한 모든 방법을 취해야 한다;
4. 동물복지에 대한 적절한 기준은 농장동물, 반려동물, 실험동물, 사육동물, 야생동물, 오락동물의 사용과 관리를 관장하는 분야는 물론, 그 밖의 부문에서 더욱 진전되고 면밀히 다듬어져야 한다.